



☎ 541041 전북 군산시 팔마로 177. 교무실: 445-4255 행정실: 446-4136 1학년실: 472-7819
 2학년실: 472-7829 3학년실: 472-7839 http://www.kunsan.hs.kr E-mail: kun4136@daum.net

[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지필고사 인정점 부여 방안]

I. 비상상황 발생시 후속 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

-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음
- 학교가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별도 운영계획 등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
-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의거하며 등교중지된 학생의 출결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

[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]

통보 주체	유형	등교중지	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	인정 비율
방역 당국	학생 본인이 확진자	[등교중지] 격리 해제 시까지 (일반적으로 7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원·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(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) 	100%
방역 당국	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	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PCR 음성확인서 	100%
단위 학교	학생 본인이 고위험 기저질환 접촉자	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 ※ 7일간 3회 이상(2일 간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(소견서) 실시, 각 검사 결과 ‘음성’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	100%
-	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	[등교중지] 결과 확인 시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PCR 음성확인서 	100%
-	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	[등교중지]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	100%
방역 당국	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	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원·격리 통지서,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,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(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)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(소견서) ※ 수동감시(10일) 대상자로서, 3일 이내(확진자검체일기준) PCR(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)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중지 권고, 검사 결과(음성) 확인 이후는 등교 	100%
방역 당국	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	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	100%

- ※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및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,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으며, **의료기관(선별검사소 포함)의 검사결과서(PCR, 신속항원검사, 진료확인서) 필수 확인** 단,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를 확인
⇒ 문자통보된 입원·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
- ※ **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,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비율 50% 적용**(※ 정기고사 응시 도중 포기한 경우 해당 과목 포기 시점부터 인정점 부여)
- ※ 코로나 의심증상자가 평가 응시를 위해 **등교를 희망하는 경우** 학교장은 지정의료기관 또는 자체 신속항원검사 도구의 검사결과(음성) 확인 후 학생 등교 가능
- ※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,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
- ※ 밀접접촉자: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, 접촉자: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
- ※ 접촉완료자: 3차 접촉자 또는 2차 접촉 후 14일 ~ 90일인자(2차 접촉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촉완료자로 간주함)
- ※ **‘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을 대상으로 별도고사실은 운영하지 않음’(학교교육과-5776)**

【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】

대상	조건	출결처리 등	인정비율
고위험군학생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○ 출석인정결석 ○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 시험실 제공	100%
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관심', '주의'	○ 질병결석 ○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 시험실 제공	80%
기타결석 (감염 우려)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○ 기타 결석 ○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 시험실 제공	80%
미인정 결석	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	○ 미인정 결석	최하점의 차하점

* 정기고사 기간에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음.(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포함.)

【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방안】

	접종일	접종 후 1~2일	접종 후 3일~
출결	단체 접종 시 학사일정에 따른. 개인 접종 시 출석인정결석	출석인정결석	질병결석
평가	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(100%) 부여	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(100%) 부여	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(80%) 부여
평가 증빙 자료	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	의사 진단서(소견서) 등	의사 진단서(소견서) 등

- ※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(수행)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
- ※ 평가 기간의 경우,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
- ※ 평가 기간 중 증빙자료(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)가 없는 학생의 경우, 질병결석 인정점(80%) 부여

II. 인정점 산출 방법

[기준점수 산출 방법]

- ①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'평균점수 비율(전입생 제외)'로 한다.(아래 ②, ③번 항목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)
- ②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
1순위 : 이전 학기 내 동일교과(동일시수)의 성적
2순위 : 이전 학기 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
- ③ 1,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.

[기준점수 산출식]

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을 산출한다.
인정점 부여비율: 인정결-100%, 병결-80%

$$\text{최종 인정점} = \text{기준점수} \times \frac{\text{결시고사 평균}}{\text{기준고사 평균}} \times \text{인정점 부여비율}$$

* (예시) 정기고사 결시로 인정점 부여

과목	기준고사(1차고사)		결시고사(2차고사)	최종인정점
	평균	기준점수 (학생점수)	평균	
수학	68.0	65	62.3	47.64(병결) 59.55(인정결)

※ 본 가정통신문은 학교 홈페이지 학교소식-가정통신에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2. 4. 12.

군 산 고 등 학 교 장 (직인생략)